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22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정하의원안, 임오경의원안, 김재원의원안)	3
---	---

I. 개요

1.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22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29.
- (3) 회 부 일 : 2025. 4.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방송(8억 2,300만 달러), 영화(8,300만 달러)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 또한 17.868명으로 방송(10.669명), 영화/애니(13.034명)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K-콘텐츠 중 가장 높은 국가경제 기여 핵심산업으로 지속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또한,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공연 예술 제작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연콘텐츠의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임.

이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정하의원안, 임오경의원안, 김재원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 ○ 세액공제 대상: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 ○ 세액공제율 - 대 5%, 중견 10%, 중소 15%(박정하의원안) - 기본공제: 10%, 추가공제* 20%(임오경의원안) *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 대 10%, 중견 20%, 중소 30%(김재원의원안)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박정하의원안, 김재원의원안) 2026년 1월 1일(임오경의원안)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 박정하의원안 2024. 11. 27. 발의(의안번호 5925), 임오경의원안 2025. 4. 29. 발의(의안번호 10224), 김재원의원안 2025. 5. 1. 발의(의안번호 10317)

□ 개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제공되는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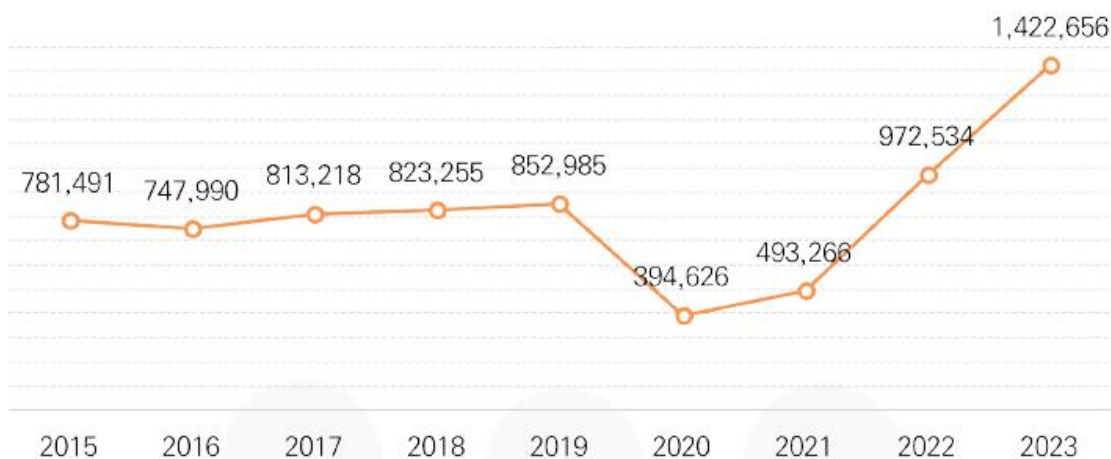
□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

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¹⁾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공연예술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공연시장 매출액은 총 1조 2,758억 5,100만원으로 2020년 이후 3년 연속 크게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약 1.67배 증가하였음

[공연시장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 공연예술조사(2023년 기준)」

2023년 전체 공연실적을 살펴보면, 15,882건의 공연이 101,028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15,044,655매의 티켓이 판매되어 약 6,470억원의 티켓판매액을 기록하였음.

1)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023년 티켓판매액 특성별 비중은 민간[대학로 외] 41.5% 문예회관이 27.4%, 대학로 14.3%, 중앙정부 11.3%, 기타[공공] 5.7%였고, 장르별 비중은 뮤지컬 70.9%, 서양음악(클래식) 15.2%, 연극 9.7%, 무용 2.9%, 국악 0.7%, 복합 0.5%였음.

□ 개정안은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공연단체가 대부분 영세 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연 제작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공연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민간공연단체 중 재정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9.1%를 차지하였고 민간기획사의 경우 재정규모가 10억원 미만인 비중이 86.1%에 달하였음.

[공연단체 재정규모 현황]

(단위: 개, %)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10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이상
민간공연단체	2,709 (79.0%)	688 (20.1%)	31 (0.9%)	- (-)	- (-)
민간기획사	236 (43.5%)	231 (42.6%)	53 (9.7%)	6 (1.1%)	17 (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 공연예술조사(2023년 기준)」

또한, 인기분야인 뮤지컬을 제외하면 총 지출액 대비 수입 비율을 칭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공연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구분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 (클래식)	한국음악 (국악)	무용
재정자립도	57.8	100.8	34.5	16.6	35.4

주: 재정자립도 = 공연단체의 총 지출액 대비 ‘자체수입+기타수입’의 비율로 산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 공연예술조사(2023년 기준)」

따라서, 세액공제를 통해 영세한 업체들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연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연 산업의 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양질의 공연콘텐츠 제작에 기여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고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 공연관광의 외국인 관람 인원은 2006년 32만 명에서 2016년에는 257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9년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 1,750만 명 중 공연을 관람하는 관광객의 비율은 약 132만명(7.6%) 수준이었음.²⁾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한국 방문 선택 시 고려한 주요 관광활동(1+2+3순위)로 ‘K-POP/한류스타 관련 공연장 및 드라마/영화 촬영지 방문’이 16.0%를 차지하였고, ‘연극, 뮤지컬, 발레 등 공연 관람’이 2.5%를 차지하였음.

2) 유지윤, 최자은, ‘한국 공연관광 산업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11.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연예술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은 4,162억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 7,012억원 등 총 3조 1,174억원이었고, 국·공립 공연시설 건립 및 공연단체 운영을 제외한 공연예술활동 및 축제 지원예산은 총 1조 570억원이었음³⁾.

공연예술예산은 2018년 1조 8,842억원에서 2023년 3조 1,174억원으로 증가하여 계속해서 지원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음.

특히 민간공연단체의 영세한 경영구조 감안 시 세액공제보다 재정지원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이 공연콘텐츠의 특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⁴⁾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되어 관객에게

3) 문화체육관광부, 「2024 공연예술조사(2023년 기준)」

4)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제공된 과세연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대표적인 공연콘텐츠인 뮤지컬의 경우 각기 다른 프로덕션에 따라 배우 캐스팅, 연출, 공연장 섭외, 무대 구현 등이 달라지므로 최초 실연의 기준을 설정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임.

셋째, 앞서 살펴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우리나라 관광, 상품 수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공연콘텐츠가 영상콘텐츠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연콘텐츠는 한류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영상콘텐츠에 비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54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